



## 國際動向

### ◎ 開發途上國과 파리條約

오랜 歷史를 갖고 있는 工業所有權保護 파리條約의 改正을 企圖하는 加盟國 政府 專門家會議가 6月中에 열릴 예정이다.

昨年末 주네브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이 公업소유권에 대하여 利害가 대립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

현재 全世界가 보유하고 있는 特許는 350萬件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개발도상국 국민이 갖고 있는 특허는 겨우 1% 정도이며 開發途上國에서 外國人에 許與한 특허의 95%가 産業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파리條約이 技術移轉에 寄與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開發途上國들의 이에 대한 불만이 차츰 고개를 들게 되자 작년말경 加盟國 政府 專門家들이 모여 雙方의 의견을 나누었으나 先·後 先進國間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었다.

특히 蘇聯圈에서는 發明者證制度和 特許權에 대한 條約規定의 限界 등을 들고 나왔으나 계속 검토키로 했다. 技術移轉에 관해선 開發途上國들로부터 外國人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不實施에 대한 문제와 權利의 濫用防止가 지적되었다. 다시말해서 現행제도로는 선진국 그룹의 利益保障에 초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開發途上國들의 주장이 긍정된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開發途上國에서는 強制實施의 強化, 不實施期間의 短縮, 料金の 優待措處 등도 주장되고 있는데 반하여 先進國들은 특허의 審査, 實施上의 難點 등을 들어 反論하고 있다.

6월에 열린 회의에서도 대개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提起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開發途上國 중심의 國際 特許條約 機構設置問題가 發論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 덴마크, 特許法 改正推進

덴마크에서는 유럽 特許機構와 EEC 特許條約의 발효를 예상하고 이 기구들의 特許法 정선에 호응하고자 自國 特許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대체로 1977年을 施行의 時點으로 추진하고 있는 改正要旨는 다음과 같다.

1. 藥品, 化合物 自體 食料品 및 이들 제법에 대하여 特許性의 許與
2. 出願의 未公開 덴마크特許出願은 自明에 관한 것이 아니라, 新規性(novelty)에 관한 것만 先行技術로서 취급
3. 追加特許의 폐지
4. 特許의 유효기간을 20년(現行은 出願日부터 1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 등이다.

### ◎ 아르헨티나, 國際分類 併用

아르헨티나는 모든 特許出願에서 아르헨티나 特許分類와 國際分類를 併行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국내분류만을 사용하여 왔으나 特許廳이 새 制度를 채용한 주요한 이유는 國際機構와의 호응을 같이하려는 것이다.

### ◎ 니과라구아, 商標制度改正

니과라구아는 中美條約(Central American Convention)에 가입에 따라 1975年 9月 17日부터 同條約制度에 따르기로 했다.

따라서 니과라구아의 商標法도 改正되어 條約國 이외의 나라로부터의 商標出願은 自國의 등록상표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되며, 登錄證明書 또는 인증된 宣誓書의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종래에 없던 異議申請制度가 도입되어 出願公告公報에 공고된 날로부터 2個月의 異議申請期間으로 정하였으며 商標分類는 42類로 나누었다.

### ◎ 파푸아뉴우기니, 特許制度 失效

파푸아뉴우기니는 1975年 9月 16日에 독립하므로써 이때까지 적용하던 오스트레일리아 特許·意匠·商標 등 工業所有權制度는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 법에 代替할 自主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新規出願制度는 없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商標만은 계속 보존되고 있다.

